

# 마무리를 원하면 마무리할 안 내라



8.7(목) 14시 신한발브에서 10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는 10개사 20명, 조합은 11개 사업장 54명이 참가했다.

## 8.5 중앙교섭 의견일치

이규선 지부장은 “8.5 중앙교섭 타결, 집단교섭도 오늘 의견접근 원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사용자대표 디와이피 공충국 상무 또한 “오늘 끝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왔다. 어렵지만 열린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인사했다.

## 말 바꾼 4차 제시안, 4사 4항목 수용불가?

휴가 전 3차 제시안에서 사측은 대한솔루션, 에스케이엠, 우창정기만 임금안을 냈고 협약서 관련해서는 10개 항목이 수용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합은 오늘 교섭에서 1) 추가 임금안 제시 2) 통상임금 산정기준 209시간 적용을 위한 시기와 방안 3) 그 외 기합의 조항은 원안수용하는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차 교섭에서 낸 4차 제시안(다음 페이지 참조)에서는 말레동현, 대원산업이 추가로 임금안을 제시했고 기존 제시한 3사는 지난 주와 제시안이 같았다.

집단교섭 협약은 후발 4사가 수용불가능한 4개항(지부 총회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조합원 징계·해고 제안, 재해보장)은 후발 사업장은 각 사 단체협약에 따르자는 안을 냈다.

지난 교섭에서 10개 수용불가 항목을 제시하며 “수용불가라는 게 기존 합의를 수정하지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어려운 조항들은 각 사별 유예준비 기간을 주는 등 적용시기를 오픈해달라”고 했으나 휴가 지나자 ‘각 사별 단체협약 적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 마무리할 안 내라 아니면 투쟁 불가피

기존 사업장 교섭위원들은 “사측이 문제삼는 조항 기존 사업장에서 문제된 적 한 번도 없다”며 209시간의 경우 대내외 상황을 고려 적용 시기와 방법 등을 오픈했으니 나머지는 원안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후발 사업장들도 “시간은 충분했다. 시간 허비하지 말고,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마무리할 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진전을 위한 축소교섭도 제안했으나 사측은 “34항 중 30항 수용까지 오는 것도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오늘 축소교섭 보다는 의견을 수렴해 차기에 더 좁힌 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마무리 위한 투쟁 준비

차기 교섭은 8월 14일(목) 14시 대한솔루션에서 열린다. 교섭을 마친 교섭위원들은 “4사 4불가 조항 관련 각 사 현황을 파악해 운영위에서 교섭 전후 집단교섭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2025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제시안(4차)**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25년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및 지부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I. 지부 요구**

**1. 임금인상**

회사명	금액	회사명	금액
계양전기	추후 제시	대원산업	월 기본급 30,000원
말레동원필터	월 기본급 20,000원	디와이피	추후 제시
대한솔루션	월 기본급 12,000원	신한발브공업	추후 제시
에스케이엠	월 기본급 25,000원	모베이스전자	추후 제시
우창정기	월 기본급 15,000원	현대케피코	추후 제시

**2. 화재발생 대비 : 원안 수용**

- ①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한 피난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실시한다.
- ③ 회사는 화재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노동자를 대피시킨다.

**3. 경기지부 집단교섭 협약**

- 별도 제시 4개조항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경기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은 각 지회별 단체협약에 따른다.
-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

**II. 통일 요구**

**1. 작업중지권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조합은 1,2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지 않는다.

- ④ 1,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발생하여 안전·보건상 개선 조치가 필요할 때, 회사는 개선 조치 이행 후 조합에 알려 확인토록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
- ⑤ 회사는 1,2항에 따른 작업 중지·대피를 이유로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작업중지권을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⑥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작업중지권 제도의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III. 중앙교섭 요구**

**1. 기후위기 대응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
-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아래 각항에 대해 기존 노사협의기구에서 안전으로 상정하여 연 1회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응해야 한다.
  - 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
  - 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 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
  - 4.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환경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2. 금속산업 최저임금 : 중앙협약에 따른다.**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2025년 8월 7일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